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고 2021-182호

『XR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
2021년 XR디바이스 핵심부품 및 완제품 상용화
제작 기업지원 사업 추가공고(상시)

XR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구미지역 중심 XR 디바이스 주요 핵심부품 및 완제품 국산화 및 상용화를 위해, “XR디바이스 핵심부품 및 완제품 상용화 제작 기업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9. 1

XR디바이스개발지원 센터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안내 개요

- 지원규모 : 총 ‘21년 385백만원 이내
(국비지원금 : 350백만원, 기업부담금 : 35백만원)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기관	추진 방식	공고기간	추가공고 일자	수행기간	총 지원금액	지원 전수
XR 디바이스 핵심부품 및 완제품 상용화 제작 기업지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모	7.21~7.31	상시 (~21.12.31)	~12월31일	350 백만원	7개사

※ 상기 지원규모 및 내용은 향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 자격 및 조건

□ 신청자격

- 신청대상 : XR디바이스 관련 산업 사업자 혹은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경북 구미시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보유기업
혹은 구미시(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예정 또는 창업 6개월 이내)

○ 지원조건

- 신청기업은 구미시에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를 보유하거나, 구미시에 예비창업자이어야 함.
- 선정기업은 총 지원 금액의 일부(10%)를 민간부담금(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최종 지원금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제한

1. 정부 및 담당기관 수행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 정산 환수금 및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2. 기업의 재무상태가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신용평가등급 하급,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
3. 기타 공모(계약)별 제한이 있는 경우

3 지원사업 내용

□ 사업명 : XR 디바이스 핵심부품 및 완제품 상용화 제작 기업지원

○ 지원기간 : 2021년 8월 ~ 2021년 12월 (5개월)

○ 지원규모 : 385백만원(국비지원금 : 350백만원, 기업부담금 : 35백만원)

- 지원분야 : XR디바이스용 주요 핵심부품* 및 완제품* 상용화 개발지원
- 지원내용 : VR·AR을 포함한 XR디바이스용 주요 핵심부품 및 완제품 패키지

- XR디바이스용 주요 핵심부품·완제품 제작지원(필수선택)과 패키지 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패키지 지원

※ 핵심부품 : 마이크로디스플레이, 광학모듈, 센서/구동보드, 어셈블리 패키지

※ 완 제 품 :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XR디바이스 업그레이드 제품

<XR디바이스 기업 지원사업>

지원분야(필수+선택)		패키지 분야 (선택 1개)	패키지 분야 지원내용	비 고
부품·완제품 (필수선택)				
핵심부품 및 완제품 제작지원	+	① 성능평가지원*	- 부품소개 및 디바이스 완제품에 관련 인증 지원 - 기존 상품의 품질개선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장비 지원	국비 50,000 천원/기업
		② 전문가멘토링	-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가 매칭 지원 - 부품소개 기술자문, 양상 공정자문 멘토링 지원	
		③ 마케팅지원	-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국/영문 브로셔 제작지원 - 기업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④ 지식재산권	- 선행특허 시장조사 지원 - 기술 및 디자인 특허출원·등록지원	

○ 세부 지원내용

- XR디바이스 관련 중소기업 핵심부품 및 XR디바이스 완제품에 대한 사업화 개발지원을 위해, 핵심부품·완제품 제작지원 사업 수행
- XR디바이스 중소기업 핵심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XR디바이스 패키지 지원 사업 수행

※ 본 지원사업은 기업당 50,000천원 내외에서 지원하고, 반드시 핵심부품 및 완제품 제작지원을 필수로 신청해야 하며, 패키지 지원사업은 5,000천원 이내에서 4개 지원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XR 디바이스 기업지원 세부 지원 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비고
핵심부품 및 완제품 제작지원 사업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디바이스용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 지원 - XR디바이스용 광학계 및 광학 모듈 제품 제작지원 - XR디바이스용 센서 제품 및 어셈블리 상용화 제품 제작지원 - 군사, 국방, 의료, 스마트팩토리등 XR디바이스 완제품(업그레이드 제품 포함) 제작 지원 	50,000 천원 내외
XR 디바이스 패키지 지원사업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디바이스 핵심 부품 성능신뢰성 · 인증 지원 · XR디바이스 개발지원 센터내 보유 성능신뢰성 및 공정 장비 무상 지원(첨부2 장비리스트 참조) - 전문가 멘토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연구개발 및 생산 애로기술에 대한 전문가 매칭 지원 · XR디바이스 상용화를 위한 부품소재 기술 및 공정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R디바이스 기업 소개자료 및 제품 카탈로그 제작 지원 · XR디바이스 핵심부품 및 완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 · 국내외 특허(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출원 및 등록 비용 지원 	5,000천원 이내 (선택 1개)

※ (예시) : 총 사업비=지원비용(50,000천원) + 민간부담금(5,000천원)

○ 공모 형태

- XR디바이스 주요 핵심부품·완제품(업그레이드 제품)을 필수적으로 개발하고, 패키지분야(성능평가, 전문가멘토링, 마케팅, 지식재산권)중 1개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4 사업신청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상시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전자우편 접수 : hjl257@geri.re.kr (이메일 접수)

- 직접방문 접수 :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XR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202호)

※ 제출 완료 시,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전화 필수 (054-460-9095)

○ 제출서류

연 번	제 출 서 류
1	핵심부품 및 완제품 제작지원 사업 신청서 1부(양식있음)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2020년 재무제표 각 1부
4	현금출자확약서 1부

[첨부 1] XR디바이스 핵심부품 및 완제품 제작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지원양식 1부

[첨부 2] XR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장비리스트 1부

5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연 락 처
담 당 자	안명찬 선임	054-460-9052
실 무 자	이선미 행정원	054-460-9053

6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 신청절차

- ① 서면검토 : 제출서류,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참여제한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 제출서류 검증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② 선정평가 : XR 디바이스 관련 산학연 전문가 Pool을 이용하여 사업선정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신청 과제 평가
- ③ 과제선정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토대로 예산 등 심의·조정하고 최종 지원과제 확정

심의·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예산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과제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기타 유의 사항

□ 적용 규정 : 본 사업 관련 제반 업무 절차는 아래 규정 및 지침 등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ICT 기금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적용

※ 단, 사업관리 기준 등이 위 적용규정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 · 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용

□ 지원제외 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지원제외 사항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6.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 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p>「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5.) 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이하 “공공재정지급금” 이라 함)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p> <p>※ 제재부가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위청구(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지원금의 5배 ②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③ 목적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